#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Ⅰ. 예산안의 규모

###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073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6%가 증가한 25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9조 8,330억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4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4 예산안 | 2003 예산 | 증·감 | |
|---|---|---|---|---|
| | | | 증감액 | 비율(%) |
| 일반회계 | 107,323 | 82,163 | 25,160 | 30.6 |

〔 세출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895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4%가 증가한 550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 9조 8,330억원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4 예산안 | 2003 예산 | 증·감 | |
|---|---|---|---|---|
| | | | 증감액 | 비율(%) |
| 일반회계 | 389,555 | 334,536 | 55,019 | 16.4 |

### 2.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7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한강수질개선에 사용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에서 전입되는 의존 세입이며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총 세입 4조 3,502억원의 0.18%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4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4 예산안 | 2003 예산 | 증·감 | |
|---|---|---|---|---|
| | | | 증감액 | 비율(%) |
|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 7,700 | 7,469 | 231 | 3.1 |

〔 세출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298억5백만원으로 한강수질개선사업비 77억원, 미집행 공원용지 및 서울숲조성 용지 보상비 2,221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총세출 4조 3,502억원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04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4 예산안 | 2003 예산 | 증·감 | |
|---|---|---|---|---|
| | | | 증감액 | 비율(%) |
| 계 | 229,805 | 63,642 | 166,163 | 261.1 |
|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 7,700 | 7,469 | 231 | 3.1 |
| 도시개발 특별회계 | 222,105 | 56,173 | 165,932 | 295.4 |

Ⅱ.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73억2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0.6%가 증가한 25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증가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사용료수입 5억3천3백만원, 사업수입 16억5천9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 3억2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212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감소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재산임대수입 2억3천5백만원, 입장료수입 3억8천3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7천7백만원, 이자수입 9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2004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04 예산안 | 2003 예산 | 증·감 | |
|---|---|---|---|---|---|
| | | | | 증감액 | 비율(%) |
| 합 계 | | 107,323 | 82,163 | 25,160 | 30.6 |
| 세 외 수 입 | | 69,308 | 65,417 | 3,891 | 5.9 |
| 경상적 세외수입 | 계 | 66,084 | 62,817 | 3,267 | 5.2 |
| | 재산임대수입 | 1,365 | 1,600 | △235 | △14.7 |
| | 사용료 수입 | 28,596 | 28,063 | 533 | 1.9 |
| | 사 업 수 입 | 18,602 | 16,943 | 1,659 | 9.8 |
| | 징수교부금 수입 | 17,433 | 16,032 | 1,401 | 8.7 |
| | 융자금이자 수입 | 88 | 179 | △91 | △50.8 |
| 임시적 세외수입 | 계 | 3,224 | 2,600 | 624 | 24 |
| | 융자금원금수입 | 1,201 | 1,166 | 35 | 3 |
| | 이 월 금 | 260 | | 260 | |
| | 잡 수 입 | 1,763 | 1,434 | 329 | 22.9 |
| 국 고 보 조 금 | | 38,015 | 16,746 | 21,269 | 12.7 |

〔 세출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95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4%가 증가한 550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주요사업분야별 증감내역은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 분야는 50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분야는 71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분야는 1,009억7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분야는 1,869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9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분야는 45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8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그리고 인건비등 일반예산분야는 692억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5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은 156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1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2004 일반회계 사업분야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4 예산안 | | 2003 예산 | 증·감 | |
|---|---|---|---|---|---|
| | 예산액 | 구성비(%) | | 증감액 | 비율(%) |
| 계 | 389,555 | 100 | 334,536 | 55,019 | 16.4 |
|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 | 5,075 | 1.3 | 3,584 | 1,491 | 41.6 |
|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 7,159 | 1.8 | 6,855 | 304 | 4.4 |
| 자원이 순환되는깨끗한 도시구현 | 100,973 | 25.9 | 94,721 | 6,252 | 6.6 |
| 생활권녹지 100만평늘리기 | 186,942 | 48.0 | 153,017 | 33,925 | 22.2 |
|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 | 4,515 | 1.2 | 6,296 | △1,781 | △28.3 |
| 일반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 69,202 | 17.8 | 55,634 | 13,568 | 24.4 |
|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 15,689 | 4.0 | 14,429 | 1,260 | 8.7 |

2. 특별회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시민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조성되고 이 기금에서 동 특별회계로 출연하는 것이며,

○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공원내 미보상 공원용지 보상 소요 사업비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편성됨.

〔 세입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7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으로 계상된 것이며, 세입내역은 기금전입금 66억8천8백만원, 이자수입 4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천1백만원, 이월금 6억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298억5백만원이며, 잠실상수원퇴적물 준설 등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77억원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내 미보상 공원용지 보상 사업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2,22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음.

Ⅲ. 기금운용계획안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및제22조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운영·관리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7, 타구 폐기물수수료의 가산금, 난방 지원금, 기타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4년도 기금 조성계획 및 2004년도 기금수입,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04 기금조성계획 > (단위 : 백만원)

| 자 금 용 도 | 구 분 | 2003년도 계 획 | 2004년도 계 획 |
|---|---|---|---|
| 계 | | 9,801 | 8,396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 ◦ 일반회계출연금<br>◦ 운용수입금(이자)<br>◦ 전년도이월금 | 3,553<br>209<br>6,039 | 3,888<br>123<br>4,385 |

< 2004년도 기금수입·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 2004 수입계획 | | 2004 지출계획 | |
|---|---|---|---|
| 수입항목 | 금 액 | 지출항목 | 금 액 |
| 계 | 8,396 | 계 | 8,396 |
| ○ 일반회계출연금<br>- 양천,노원,강남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7%~20% 출연금<br>- 양천,노원,강남 지역 난방비 50% 출연금 | 3,888 | ○ 사 업 비<br>-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원비<br>-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원비<br>-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원비 | 7,807<br>1,789<br>1,915<br>4,103 |
| ○ 적립금 이자수입 | 123 | ○ 기금적립금 | 589 |
| ○ 전년도 이월금 | 4,385 | | |

Ⅳ. 검 토 내 역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73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6%가 증가한 25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입 9조8,330억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임.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13억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사용료 수입은 285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3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체적 내역은 입장료수입이 139억2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사용료수입은 146억원

6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사업수입은 186억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8천만원으로 7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요금은 47억5천7백만원으로 9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행료수입은 7억5천3백만원으로 2억9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사업수입은 125억1천2백만원으로 4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174억3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1천3백만원 증가되었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이자수입은 8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융자금 원금수입은 12억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이는 재활용사업자 융자금을 회수한 것임.

난지도매립가스 판매수입 등 잡수입은 전년대비 3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80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2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민주공원 조성 사업비 등 국고보조 예산임.

〔 세출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95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550억1천9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9조8,330억원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임.

사업목표별로는 ①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분야에 1.3%인 50억7천5백만원, ②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분야에 1.8%인 71억5천9백만원, ③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분야에

25.9%인 1,009억7천3백만원, ④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분야에 48%인 1,869억4천2백만원, ⑤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제구축분야에 1.2%인 45억1천5백만원, ⑥인건비등 일반예산이 18.8%인 692억2백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이 4%인 156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사업목표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 목표를 위해

-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장비 및 시설보수 보강에 따라 노후된 측정기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2004년에는 1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운행중인 중·소형 경유사용 자동차를 LPG 사용차로 개조(구조변경)하기 위한 사업비로 22억5천만원등 5개 단위사업에 총 50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를 위해 한강수질개선, 지천수질개선, 지하수의 안정적관리, 토양오염 개선등 4개 성과사업으로 구분 예산을 편성한 바,

- 한강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 11억4천만원, 향후 10년대비 분뇨처리시설 용량 부족분에 대한 하수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 26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지천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하천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장비 보강을 위해 6억3천5백만원 등 12개 단위사업에 총 71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셋째,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목표를 위해 폐기물발생 최소화, 폐기물재활용 극대화, 폐기물 안전한 처리 등 3개 성과사업으로 구분 예산을 편성한 바,

- 폐기물발생 최소화를 위해 우리시, 마포구, 고양시간 체결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2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에 5억6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 지원비로 45억1천4백만원, 노후차량 정비용 공구교체 및 정수, 비품구입비로 15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폐기물 안전한 처리를 위해 송파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지원 사업비로 58억4천9백만원,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38억8천8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177억9천4백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541억3천1백만원,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금 20억5천6백만원, 동대문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지원사업비 19억4천5백만원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1,009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넷째,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목표를 위해

생활주변 공원녹지확충,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조성 및 이용 활성화, 민주공원 조성 등 5개 성과사업으로 구분 예산편성하였음.

주요사업 반영내역으로는

-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으로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10억원, 2개 근린공원(용두, 효창) 조성을 위해 46억2천만원, 학교주변 녹화사업 추진에 84억8천6백만원, 대학교 담장 개선사업 추진에 49억5백만원, 1동 1마을 공원조성 사업비 149억5천5백만원, 서울숲(뚝섬) 조성공사 사업비 352억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2억3천1백만원, 임상이 빈약한 근교산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에 20억원,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에 12억9천3백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19억2천만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 사업에 30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사업으로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에 41억4천만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에 23억7천5백만원, 하천변 녹화사업에 16억6천5백만원, 수목

식재 사후 관리 사업비로 30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대공원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등 192억2천6백만원, 월드컵공원 관리 및 시설물 보수정비에 13억7천1백만원, 남산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14억9천3백만원,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노후시설물 보수사업비 111억2천7백만원, 여미지식물원 운영 및 관리비 77억7천9백만원, 72개 시 관리공원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9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민주공원 조성 사업으로 158억1백만원 등 104개 사업에 총 1,869억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섯째,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 목표달성을 위해
환경행정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생태계 보전,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 등 3개 주요사업으로 구분 예산편성하였음.
주요사업 반영내역으로는

- 환경행정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구축을 위한 사업비 9천만원, 환경영향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토지매입 및 모니터링 사업비 22억5천6백만원, 야생동식물에 대한 시민홍보 및 보호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으로 "서울의제 21"실천 등 녹색위 활동사업비로 4억5천3백만원, 시민(환경)단체 등 시정참여 공모사업 추진사업비 4억원등 18개 사업에 45억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여섯째, 환경국소관 징수교부금은 총 156억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56억6천8백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천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3천1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주요내역은

- 국고보조 기금 수입이 66억8천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이 2억9천1백만원,
- 예금이자수입 4천9백만원,
- 이 월 금 6억7천2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세출예산안 〕

○ 2004년도 환경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98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77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221억5백만원이 편성내용임.
도시개발특별회계 2,221억5백만원을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로 2,221억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응봉근린공원 등 28개소 공원용지 보상비이며, 서울숲 조성관련 공원용지 보상비 1,688억7천2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3. 기금운용계획안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기금수입계획은 83억9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38억8천8백만원(난방비의 50%, 반입료의 7~20% 상당),

적립금 이자수입 1억2천3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43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2004년도 기금 지출계획 83억9천6백만원에 대한 사용은 지역난방비 지원금 35억3천5백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3억8천8백만원, 주민지원 사업비 38억8천3백만원, 기금 적립금 5억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Ⅴ. 검 토 의 견(전문위원: 김종식)

□ 2004년도 서울특별시 환경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제전망과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산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우리경제는 불안한 노사관계,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경기하강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성장률은 3%대 이하로 전망됩니다.

○ 정부에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2004년도 실질성장률을 2003년도 수정전망치 3%대보다 2.5% 증가한 5.5%내외, 무역수지는 80억불내외, 원/달러 환율은 2003년과 동일한 1,2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시세수입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은 올해 수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원배분의 효율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서울,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민선3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경영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예산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시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재정지출의 효과는 반드시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배분을 통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골고루 충족시킴으로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며, 일단 성립된 후에는 집행부를 구속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한 재정활동의 결과를 시의회에서 다시 확인하고 심의하여 승인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권 부여와 감독의 형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시민의 여망을 조화시켜 시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므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 예산규모는 14조 1,832억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규모이며 실질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규모는 회계간 중복분 1조 3,175억원을 제외한 12조 8,657억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순계규모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기관 지원 5조 3,575억원을 제외한 실 집행규모는 7조 5,083억원입니다.

○ 2004년도 환경국소관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073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6%가 증가된 25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세입 9조 8,330억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7억원으로 물이용징수에 따른 한강수계관리 기금 지원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895억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4%가 증가한 550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세출 9조 8,330억원의 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298억5백만원으로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77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미보상공원 용지보상비로 2,22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83억9천6백만원을 조성하여 양천, 노원, 강남 3개자원회수시설 지원비로 78억7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금적립금으로 5억8천9백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비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건설비 541억3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공사는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에 설치되는 1일 처리능력 750톤으로써 마포구와 중구, 용산구 등 3개구의 자원을 회수하여 처리코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에 걸친 공사입니다.

총 공사비는 1,701억9천6백만원으로 현 공정율은 56%이며 2004년말까지 100%의 공정을 마치고 2005년부터는 시운전을 시작하여 가동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총 공사비중 150억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나 공정율이 정해져 있고, 일괄공사 계약에 따라 년도별 지급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총 공사비중 150억원이 부족하게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정율이 저하되거나 건설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한 계속비제도는 당해년도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완공에 여러해가 소요되는 도로건설, 지하철건설 자원회수시설건설 등에 대한 소요예산을 그 총액, 기간, 연부액 등을 적산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속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계속비제도가 있음에도 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당해연도 예산만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숲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원녹지의 균형배치를 위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누구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울숲 조성에 2,041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서울숲 조성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번지일대 약 35만평(1,156천㎡)을 가족피크닉마당, 청소년 운동시설, 생태숲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 1 ~ 2005. 4. 약 2년여에 걸쳐 총사업비 2,266억9천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이와 같이 좋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조성되는 서울숲, 일명 뚝섬공원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서울시의 유산중의 하나라 사료됩니다.

○ 이와 같은 뚝섬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우리의회에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예비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억1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

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도 아니고 예산초과지출예산도 아닌데도 법규에 반하여 무리하게 집행한 것과 특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숲 조성비중 보상비로 1,688억7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몇 필지인지, 보상평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보상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하는 것인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과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편성 소관의 부적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 잠실주공아파트주변 오수관신설공사비 10억9천6백만원과 난지도 조립식주택주민 임시이주지원 2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잠실주공아파트주변 오수관 신설공사비는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가 재건축등으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류식화 추진을 위한 지역간선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기존 합류(오수, 하수)식을 분류식으로 전환코자 편성된 것으로써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나 오수관과 하수관거의 설치관리는 건설국 치수과 소관으로서 건설국에서 편성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기초(본)시설이므로 원인자부담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재건축허가시 허가조건으로 재건축조합(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난지도조립식 주택주민 임시이주지원비는 월드컵경기장 건설시 주변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 하여 지금까지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응 이해가 되나 엄연하게 주택국이 있음에도 이를 환경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위반하는 사례로써 차후에는 예산편성전에 소관을 이관하여 주택국(동조례 제15조, 6호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편성운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넷째 시설관리공단 위탁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비 111억2천7백만원, 제주여미지식물원 위탁관리비 77억7천9백만원 총 189억6백만원을 위탁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경영관리의 전문화로 관람객의 편의제공, 공공복리 증진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저촉될 수 있으며,

○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2항에서 공기업으로 인하여 민간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물론 서울시에서 출자한 공기업들은 정당한 절차와 법적근거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할 것이나 정말 공익성이 강한 공공사업들을 제외한 여타 사업들은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용역 또는 수탁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부나 일반기업에서도 민간(외부)에 위탁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

간이 정말 할 수 없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 등은 우리 서울시 공기업에 위탁하고 일반시민이나 기업들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유로운 참여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장묘시설, 지하도상가 등 사업성격이 다른 16개 분야의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어 공원, 식물원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본적인 철학이나 개념이 부족하여 공원의 장기목표 설정이나 비전제시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 관리위탁 부서인 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부서인 건설기획국간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상이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건설위원회로 소관이 중복됨에 따라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매점, 식당, 유희시설 등 수익시설은 민간에 재위탁하여 관리하는 실정이므로 당초 위탁목적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여미지식물원과 어린이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사업본부로 전환하여 이원화된 지도감독을 환경국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 재산관리운영권 독립이 소장에게 위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중장기 방안으로는 전문민간단체,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별도의 공원(환경)관리 전문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사업별설명서 제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예산편성기본지침,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등 예산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로써 단위사업에 대한 목적, 근거, 필요성, 기대효과 그리고 예산안의 과다, 과소책정 여부에 대한 세부내역이 포함되어야만 설명자료로써 참다운 예산안의 심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는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췄을 뿐 참고할만한 자료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예로 들면 사업별설명서 제28쪽 용마도시공원 조성비 10억원, 35쪽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비 20억원, 보라매공원 재정비 17억원 등등의 자료들은 설명자료로써 가치가 없다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적절한 심의를 위하여서는 제출된 예산안뿐만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자료와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명백한 산출기초가 명시된 세부설명서가 제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과다, 과소책정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 참다운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떤 목적에 정말 짜임새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심의·의결하는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서가 작성되고, 공개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서울 그린트러스트 지원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도시녹화 사업비로 6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 차원의 공원녹지 확충사업과 함께 시민, 단체,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녹색서울을 물려주기 위한 도시녹화 운동인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동의 성공적인 초기정착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서울 그린트러스트에 출연금 및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은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나

○ 서울 그린트러스트는 서울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이 아니고 협약을 통하여 지원하겠다는 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할 것이며, 특히 예산편성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협약사항만을 근거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늦게나마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법적근거인 조례개정안을 발

의하였으므로 다행이라 사료되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 ○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수립(지방재정법 제16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제30조),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편성기본지침(지방재정법 제30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절차와 근거에 따라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나
- ○ 관행적, 편의적으로 실·국별 또는 부서별 예산액의 배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를 예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보조금을 '01~'03년 3년동안 매년 15억원씩 편성하여 총 44억2천만원을 자치구에 보조하여 음식물분리수거 확대를 추진하여 왔으나 2004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2005. 1. 1일이 1여년 남지않은 시기에 보조금예산을 중단할 경우 전량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는 서울시로써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4~2005년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사업들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1차년도인 2004년도에 총사업비중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건설비용의 약 30%인 537억9천4백만원중 129억8천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양천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동대문구 등 4개구에 대해서는 적정 시비보조금 148억6천2백만원중 16%에 해당하는 24억1천1백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 ○ 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의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산은 우선하여 편성함으로써 정부보조금을 확보하고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할 것입니다.
- ○ 또한 서울대공원 생태동물원 조성은 19년이 지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동물들의 관리는 물론 관람객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써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지시가 있었고 2003. 10.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승인하였음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이는 시장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동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실·국별 예산배분에 밀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 ○ 이상과 같은 사업들은 정부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업들이며 또한 시민의 안전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시 투자재원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